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883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4.

발 의 자:한병도·김교흥·김민석

김민철 · 김승원 · 김영배

오영환 · 이상헌 · 이용빈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은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,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만을 대상으로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배분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 규정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노력하고도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실질적으로 당선 목적이나 노력 없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될 소지가 있음.

이에,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 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, 제26조의2제2항).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
- 1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 한다.
 - 가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: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
 - 나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: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(비례대표전국선 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. 이하 "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"이라 한다)
 - 다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: 각 정당이 추천한

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

- 2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3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
- 1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·지 급한다.

- 가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: 지급 당시 정당 별 국회의석수의 비율
- 나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: 최근 실시한 국 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
- 다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: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
- 2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3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 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배분·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·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

금) ① (생 략)

②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여성후보 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・ 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시・ 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 구・시・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 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 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

1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 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 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, 총액 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 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(비례 |

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 제26조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 금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 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 배분 · 지급한다. 이 경 우 지역구시 · 도의회의원선거 와 지역구자치구・시・군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여성추천보조 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 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 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
 - 1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 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 에 따라 배분 · 지급한다.
 - 가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: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

나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

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 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. 이하 "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" 이라 한다)에 따라, 그 잔여분 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 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

- 2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정당이 없는 경우
 - 가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미만을 추천한 정당
 -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・지급한다.
 - 나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추천한 정당
 -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・지급한다.

총액의 100분의 40: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 수의 비율(비례대표전국선 거구 및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 율의 평균을 말한다. 이하 "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"이라 한다)

- 다. 배분대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: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 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 의 비율
- 2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・지급한다. 이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 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 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 다.

③ (생략)

제26조의2(공직후보자 장애인추 제26조의2(공직후보자 장애인추 천보조금) ① (생 략)

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 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 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 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시 • 도 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 ·시·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 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 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 | 보조금 총액으로 한다.

3.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 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 는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 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 준에 따라 배분 · 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 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제2호 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천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 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 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 · 지급한다. 이 경우 지역구시 · 도의회의원 선거와 지역구자치구・시・군 의회의원선거에서의 장애인추 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 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 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 로 한다.

-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이 있는 경우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4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, 총 액의 100분의 40은 최근 실시 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 율에 따라, 그 잔여분은 각 정 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애인후 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 역구 장애인후보자수의 비율 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
- 2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이 없는 경우
 - 가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
 -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 준에 따라 배분 · 지급한 다.
 - 나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1 이상

- 1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1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 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. 가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40: 지 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 수의 비율
 - 나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40: 최 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
 - 다. 배분대상 장애인추천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20: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장 애인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장애인후보 자수의 비율
 - 2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 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 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 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

<u>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</u> <u>정당</u>

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가목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수 없다.

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 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3. 장애인후보자를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 이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2호에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③ (생략)